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44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심정훈, 최윤희, 박동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이한나, 김지훈, 윤석빈, 신혜림, 박원경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3.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30. 접수 제55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4447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0.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13. 송달되어 2018. 4. 28. 확정되었다.
- 2) 한편 위 채권의 미지급 원리금 액수는 2019. 9. 16. 기준으로 165,211,843원이다.

나. C의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4. 4. 28.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 한편 망인은 2019.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F, G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피고 3/9, C, F, G 각 2/9이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5509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예금채권 5,817원(H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I기금에 대하여 57,291,00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및 J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9. 3. 31.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2/9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온전히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다만 그 등기명의만을 배우자인 E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에 대한 상속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 5-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E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E의 분양순위 등이 고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당첨이 이루어지고 그 분양대금을 E, 피고, E의 자녀들이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주장

피고는, E가 2000. 6.경 직장암 수술 이후 계속된 항암치료로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마련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바,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기여분 제도를 알지 못하였고 법무사의 말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31.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진정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자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과 피고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마포구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서울 마포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마포구 [] 대 906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2.8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9061.2분의 49.2229. 끝.

